

제2909호
2022. 3. 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173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7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
 - 위원회 존속기한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
 - 구성인원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서 정한 인원 범위내
- 회의(안 제4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가능

□ 수당 등(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04, 팩스 : 02-3396-8657, email : ssanghun020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

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